

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
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, (주)쌍용인터내셔널과의
소규모합병과 관련하여 소규모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
위하여 2013년 9월 23일을 소규모합병반대의사표시 기준일로 하고,
2013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
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
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3년 9월 5일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B동 13·14층
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
공동대표이사 회장 야마시타 유타카
공동대표이사 사장 이 윤 호

명의개서 대리인

한국예탁결제원
사장 김 경 동